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06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이종배・이종욱・김성원

서천호 · 성일종 · 엄태영

진종오 · 송석준 · 유용원

정희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운동조직은 생활환경 개선, 취약계층 돌봄, 재난 구호활동 등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조직으로, 그 장에 대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수당 등의 지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 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의2(수당 등의 지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
	직의 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
	<u>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u>
	급할 수 있다.